[대만] 2019년 2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<예고> 식품원료 녹색커피추출물 사용제한 및 라벨 표기법 「食品原料綠咖啡萃取物之使用限制及其標示」 초안 예고

○ **공고 기관 :**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(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)

○ **공고 일자 :** 2019년 1월 22일

○ **근거 법규 :**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-1, 제2항 및 제 22조 제1항 제10호

○ **공고 번호 :** 衛授食字第1071303378號

○ **공고 내용**

1. 본 규정의 법적 근거를 밝힘
2. 식품원료 녹색커피에 대한 사용제한, 원료원, 사용부위, 형태, 제조방식 및 1일 권고 섭취량 규정
3. 녹색커피 식품원료 사용 시 라벨링 표기법 및 경고문 규정

<식품원료 녹색커피추출물 사용제한 및 라벨 표시법 초안>

관련 규정	규정 설명
1. 본 규정은 <식품안전위생관리법> 제15조-1, 제2항 및 제 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해 지정함	본 규정의 법적 근거
2. 녹색커피를 식품원료로 사용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(1) 본제품은 Coffee arabica 및 Coffee canephora 원두의 건조 및 로스팅을 거치지 않고 추출되었음 (2) 본제품의 매일 섭취량은 400mg이하이며, 카페인 함량이 0.05% 일 경우 매일 섭취량은 1,5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됨	녹색 커피 식품 원료 사용 시 사용 제한, 원료원, 사용부위, 형태, 제조 방식, 1일 섭취 제한량 규정
3. 녹색커피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제품 외포장 표기 시 [12세 이하 어린이, 임산부, 소화불량, 중대질병 환자들이 복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]란 문구를 기재해야 함	녹색커피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 시 이에 대한 제품 외포장 경고문 표기 규정

- 만일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 47조 및 48조에 의해 벌금 NTD 3 ~ 300만원(한화 약 1 ~ 110백만원)을 가할 수 있음

<시사점>

녹색 커피 성분에 대한 신규 제도가 규정되므로 관련 제품 대만 수출 시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주의가 필요 함

* 자료원: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(2019.1.22.)

https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cid=4&id=t448487